

교원업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

개정 2019.04.17. 개정 2022.04.04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의거하여 교원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교원 인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본교의 교육여건 조성, 교육 및 연구의 질적 향상, 사회참여와 봉사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교원업적평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- ①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사항
- ② 교원업적평가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
- ③ 관련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
- ④ 교원업적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
- ⑤ 심사 결과의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
- ⑥ 기타 교원업적평가에 관련된 사항

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<개정 2019.04.17., 2022.04.04.>
- ② 위원회의 구성은 교육 및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열(학과)별 인원을 안배한다.

제4조 (임기)

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직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 (연구팀)

위원회의 목적과 기능, 활동사항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팀을 둘 수 있다.

제6조 (회의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.
-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의 3분의 2이상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

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며 부결시에는 반드시 그 부결에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다.

제7조 (회의록)

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.

제8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<개정 2013.03.01.>
- ② 간사는 교무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3.03.01., 2019.04.17., 2022.04.04.>

제9조 (비밀엄수)

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4.1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4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.